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25. 12.

제 안 자 : 국토교통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	회의정보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284	이해식의원 등 14인	’25.9.26.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25.11.18.)
				소위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5.11.26.)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5.12.15.)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605	천준호의원 등 10인	’25.10.16.	소위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5.11.26.)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5.12.15.)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213	이연희의원 등 17인	’25.11.14.	소위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5.11.26.)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5.12.15.)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2025. 12. 17.)는 위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공원과 궤도사업 관리의 통일성 확보를 위하여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규모의 근린공원에 건설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나. 궤도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궤도사업 허가 시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5항).

다.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라.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의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승인의 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마.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궤도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근린공원 중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규모의 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편의 증진”을 “공공복리증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정한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궤도사업 허가를 받은 궤도사업자가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궤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재허가의 절차와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허가·변경허가 또는 재허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의2 및 제1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12의3.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제2항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6의3.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제1항제2호 중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허가·변경허가 또는 재허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궤도사업 허가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궤도사업 허가(변경허가 및 재허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궤도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2항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궤도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에 대한 특례 및 경과조치) ①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은 날부터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궤도사업자의 경우 20년을 경과하게 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제4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허가를 받지 않으면 그 허가는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②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은 날부터 20년이 경과한 궤도사업자의 경우 그 허가는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4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허가를 받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궤도사업의 허가)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도립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이하 "국립공원등"이라 한다)에 건설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하 "특별시장·광역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립공원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을 포함하고 있고 국립공원등에 건설되는 궤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제4조(궤도사업의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근린공원 중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규모의 공원--------. ----------

이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과 협의하여 허가한다.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 재해 방지, 환경 보전 및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공공복리증진----------.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정한다.
<신 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궤도사업 허가를 받은 궤도사업자가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궤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신 설>	⑨ 제8항에 따른 재허가의 절차와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허가·승인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전용궤도운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궤도사업 경영 또는 전용궤도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2조(허가·승인의 취소 등) ①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제5조	1. ----------허가·변경허가 또는 재허가-------

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 ----------
2. ~ 12. (생 략)	2.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2의2.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12의3.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 16. (생 략)	13. ~ 16. (현행과 같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전용궤도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용궤도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6의3.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생 략)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제32조(벌칙) ① ----------. ----------. 1. (현행과 같음) 2. ----------허가·변경허가 또는 재허가----------

3. ~ 5. (생 략) ②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